

전주지방법원 2015. 3. 20 선고 2014가단15608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 유한회사

특별대리인 B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5. 2. 10.

판결 선고2015. 3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A 유한회사는 26,971,184원과 그 중 26,970,977원에 대하여, 피고 B은 피고 A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,971,184원과 그 중 26,970,977원에 대하여 각 2014. 4. 17.부터 2014. 6. 13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유한회사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와 망 D 사이에 2013. 5. 16. 체결한 증여계약은 20,125,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4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, C은 각자 원고에게 20,125,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4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구상금 청구 부분

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, 피고 A 유한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 A 유한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에 대하여 위 1.항 기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 한편 D은 2013. 5. 16.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중 자신의 지분(1/2)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피고 C은 같은 날(2013. 5. 16.)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,000만 원, 기간 2015. 5. 17.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약의의 전득자이다.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5,292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3. 5. 20. 말소되었다.

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위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인 20,125,912원(2014. 4. 17.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 시가 42,250,000원(= 84,500,000원 × 1/2) - 피담보채무액 22,124,088원(= 44,248,176원 × 1/2))과 이에 대하여 2014. 4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B, C은 가액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20,125,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4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D이 2013. 5. 16. 처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, 을 제2, 5, 6,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(채무)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계약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,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.

① 군산시 E 지상 건물 15,072,000원	① 전북은행 대여금 654,419,768원, 카드대금 5,138,405원
② 군산시 F 지상 건물 603,366,304원	② 국민은행 12,161,940원
③ 군산시 G, 군산시 H, I, E 토지, F 대지, J, K, L, M, N, O, P 토지의 합계 341,039,387원	③ 현대캐피탈 17,711,000원④ 외환카드 2,795,168원⑤ 국민카드 2,530,996원⑥ 우리비씨카드 36,841원
④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 40,000,000원(2014. 1.경 시가(피고의 자인), 원고는 위 일시경 시가가 84,50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79,000,000원이고, 원고 주장의 시가는 2014. 3.경 시가일 뿐이다)	⑦ 동군산새마을금고 10,216,163원⑧ Q 30,000,000원 (원고는 130,00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그 중 대여금 채권 100,000,000원의 발생일은 2013. 11. 12.이므로1)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Q이 제출한 채권계산서(문서송부서) 참조,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)⑨ S 75,000,000원
⑤ 군산시 R아파트 102동 606호 120,000,000원 (을 제6호증, 2013. 5. 28. 매도금액)	⑩ 군산시 1,223,610원
⑥ 전북 부안군 T 토지 20,000,000원(을 제5,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. 9. 1.경 시가는 25,248,000원이므로 2013. 5. 16.경 시가를 20,000,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)	⑪ 국민은행 (근저당권부 채무) 22,124,088원⑫ 원고 27,000,000원
합	1,139,477,691원

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안영화

별지

1)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Q이 제출한 채권계산서(문서송부서) 참조